

인권센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홍익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구성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담당하기 위하여 본교 학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권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가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접촉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4. “괴롭힘”이란 본교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5. “인권침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와 이에 준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 정관 및 학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교원, 직원, 학생을 말한다.
7. “가해자”란 인권침해를 가한 사람을 말한다.
8. “피해자”란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9.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사실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10.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1.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2.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3. “참고인”이란 인권침해 사실이나 당사자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 센터의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업무 수행의 독립성)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때에는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조직 및 구성

-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서울캠퍼스에 둔다.
② 센터에는 인권상담실과 인권교육실을 둔다.
③ 인권상담실은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에 각각 둔다.

- 제6조(소장) ① 센터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임명된 위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제7조(인권상담실) ① 인권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 및 상담
2.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처리절차의 주관
3. 인권침해 사건의 신고인 및 피해자 보호
② 인권상담실에 실장을 둔다.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서울캠퍼스의 경우에는 소장이 이를 겸무한다.
③ 인권상담실 업무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로 구분하며, 업무별 상담원 및 직원을 각각 둔다.
④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상담 및 조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치를 갖춘다.

- 제8조(인권교육실) ① 인권교육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인권침해의 예방교육자료 제작
3.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연구 수행
4. 그 밖에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 지원
② 인권교육실에 실장을 둔다.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인권교육실에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원을 둔다.

- 제9조(인권센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인권센터운영위원회는 소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이상 당연직 4인), 직원위원 1인, 학생위원 3인, 외부전문가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되, 학생위원과 외부전문가위원을 합한 총 4인의 성별은 동등하게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10조(인권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권침해 예방대책 수립
2.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3. 인권침해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조정·시정권고 및 징계 요구 등)
4. 그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캠퍼스 위원회는 인권상담실장(서울), 교무부처장(교육과정담당), 교무부처장(행정담당), 학생부처장(이상 당연직 4인), 교수위원 3인, 직원위원 3인, 학생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인권상담실장(서울)으로 한다. <개정 2022.9.1.>

② 세종캠퍼스 위원회는 인권상담실장(세종), 기획담당부처장, 교무연구담당부처장, 학생담당부처장(이상 당연직 4인), 교수위원 3인, 직원위원 3인, 학생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인권상담실장(세종)으로 한다. <개정 2022.9.1.>

③ 위원은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되, 구성단위별 3인 중 2인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④ 교수위원, 직원위원 및 학생위원은 각각 교수, 직원, 학생 관련 사안에만 위원회에 참석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 등의 제척) 소장, 위원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13조(위원 등의 기피·회피)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거나 하였거나 또는 연관 업무를 함께 수행하거나 하였거나 하거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 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인권침해 사건 심의의 부의에 따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인권상담실 상담원 또는 직원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센터에 보관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 인권침해조사 청구내용에 따라 소위원회를 두어 조사하거나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소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9.1.>

③ 소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 및 조정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처리

제16조(신고) 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인권침해사건을 신고할 때에는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권침해조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서는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및 연락처
3. 인권침해조사의 청구 취지 및 이유

② 센터 외의 본교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피해자가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사안은 처리하지 않는다.

④ 센터는 한번 조사 후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처리하지 않는다.

제17조(신고의 각하)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신고 내용이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 내용에 의하여 피신고인이 특정될 수 없는 경우
3. 신고 내용이 단순한 민원성 신고에 해당하는 등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5.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소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조치) 소장은 인권침해가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피해자 및 신고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권침해행위(피해자와의 접촉, 신체의 안전 및 사생활의 보호 침해, 명예훼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포함)의 금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수업 및 업무에서 배제 포함), 격리 등 공간분리
3.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그 밖에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소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권침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가 개시되면 소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부의한다.

⑤ 소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참고인

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센터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21조(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센터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 ② 사건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22조(피해자 등 보호) ① 피해자(대리인 포함)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 ② 인권침해의 피해자, 신고인 및 사건 조사에 협력한 사람에 대하여 임용, 승진, 급여, 성적 등에 관한 불이익한 조치를 하거나 비방 그밖에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과정에 있어서 피신고인 또는 가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④ 당사자 및 참고인은 사건과 관련한 자들의 신원을 노출해서는 안 되며, 명예훼손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소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하거나 센터의 조사 활동이나 인권침해조사의 결과 처리의 이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신고의 기각 및 조사의 종결) ① 소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뤄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종결한다.
1. 사건의 당사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2. 센터의 조사권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
 3.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③ 소장은 신고를 기각하거나 조사를 종결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당사자간 해결) ①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센터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장이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할 때에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사건을 종결한다.

제25조(조정) ① 소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소장은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구제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조정이 성립한 경우 당해 사건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사건을 종결한다.

제26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의 판단에 따라 관련 기록을 센터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인권침해심사 결과의 처리) ① 인권침해심사 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조치
2.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3. 피해자에 대한 사과
4.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5. 그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② 소장은 인권침해심사 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 사유와 징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피신고인의 소속과 신분에 따라 총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가중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해자가 제1항의 권고를 불이행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재범인 경우
3. 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하는 경우
4. 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경우

제28조(결정의 통지) 소장은 사건 처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의신청) 제27조에 따른 권고 및 요청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0조(비밀 유지의 의무) ①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대리인 포함)와 신고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나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및 수집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건의 조사와 처리과정에서 교내·외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받아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모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징계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31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본교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2조(역량강화 교육) 상담원과 직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33조(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4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본교 학칙과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규정 등 폐지) ①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성폭력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및 「교내 구성원 간의 괴롭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② 성평등상담센터는 폐지한다.

제3조(성평등상담센터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성평등상담센터의 사무는 인권센터에서 승계한다.

부 칙(2022.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종전의 성평등상담센터로부터 승계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